

중구 D-02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안 번호	제1203호
----------	--------

제출년월일 : 2015. 1.
제 출 자 : 중구청장

1. 제안사유

-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중구 D-02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제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 중구 D-02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울산광역시에 요청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구분	구역명	사업유형	위 치	면적	계 획 용적율	최대허용 용 적 율	정비계획 수립시기	단계별 계 획
폐지	중구D-02	도시환경	우정동 53번지 일원	34.2	800	1,200	2012년	1단계

나. 해제사유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계획 수립시기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광역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함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

4. 주민공람

- 공람기간 : 2015. 1. 26. ~ 2015. 2. 25(30일간)
- 의 견 : 현재까지 “의견없음”

5. 위치도



6. 토지이용계획도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123)

1. 의안명 : 중구 D-02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1. 27.(화)
-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위원회회부 : 2015. 2. 02.(월)
- 위원회심사 : 2015. 2. 11.(수)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가. 제안이유

-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중구 D-02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제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 중구 D-02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울산광역시에 요청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173회-본회의 제2차부록)

구분	구역명	사업유형	위 치	면 적 (m ²)	계 획 용 적 율 (%)	최 대 허 용 율 (%)	정비계획 수립시기	단계별 계획
폐지	중구D-02	도시환경	우정동 53번지 일원	34,200	800	1,200	2012년	1단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도



○ 해제사유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계획 수립시기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광역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함

4. 근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

5. 검토보고(전문위원 김기호)

-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같은법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정비구역 해제 후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 다각적인 도시재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